

01

농업재해보험 제도

[제1절] 농작물재해보험

[제2절] 가축재해보험

[제3절]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제1장 | 농업재해보험 제도¹⁾

제1절 농작물재해보험

1. 개관

1.1 사업목적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을 통해 실손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1.2 근거법령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다.

1.3 사업대상자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이며, 구체적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주 : 1) 농업재해보험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농·임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을 좁은 의미로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다. 이러한 보험들은 각기 도입 시기는 다르나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은 같다. 각 보험들의 시행 목적, 근거법령, 운영체계, 추진절차,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1.4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1975년	•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연구 실시(국립농업경제연구소)
1979~1981년	• 농업재해보험 실시 타당성 검토(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2~1986년	• 논벼 재해보험 시험사업 설계 및 조사사업
1986년 2월	• 농업재해보험 시험사업단 신설
1986~1990년	• 수도작 대상으로 5년간 도상연습
1992년 3월	• 농업재해보험 시험사업단 폐쇄
2000년 3월	• 농작물재해보험 도입준비위원회 및 실무작업반 구성
2001년 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제정
3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정, 사과·배 시범사업 실시
2002년 4월	• 복숭아·포도·단감·감귤 시범사업 실시
2003년 3월	• 사과·배 전국적 본사업 실시
2004년 3월	• 복숭아·포도·단감·감귤 전국적 본사업 실시
2005년 1월	•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국가재보험도입 및 기금 설치)
6월	• 농작물재해보험기금 설치
2006년 5월	• 뽕은감 시범사업 실시
2007년 9월	• 밤·참다래·자두 시범사업 실시
2008년 3월	• 뽕은감 전국적 본사업 실시
5월	• 고추·콩·감자·양파·수박 시범사업 실시
2009년 3월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 공포
5월	• 벼·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 시범사업 실시
2010년 1월	• 농어업재해보험법시행(농작물재해보험법을 전면 개정)
	• 농어업재해보험사업(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시작
4월	• 대추 시범사업 실시
8월	• 시설딸기 및 농업용시설(비닐온실) 시범사업 실시
9월	• 시설오이 시범사업 실시
10월	• 시설토마토 시범사업 실시
12월	• 시설참외 시범사업 실시
2011년 11월	• 복분자 시범사업 실시
12월	•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시설) 시범사업 실시
2012년 9월	• 인삼, 시설멜론, 시설파프리카, 오디, 녹차 시범사업 실시
2013년 9월	• 시설작물(부추, 시금치, 상추, 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시범사업 추가
11월	• 배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4년 10월	• 시설작물(배추, 가지, 파) 시범사업 추가
11월	• 단감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5년 10월	• 시설작물(무, 백합, 카네이션) 시범사업 추가
11월	• 사과 적과전 종합보장방식 시범사업 실시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1.5 국고지원 내용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의 100%를 국고로 보조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별 지원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6 연도별 보험사업 운영 현황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의 지속적인 확대로 보험가입 농가수 및 가입면적 등이 매년 증가하여 2015년에는 가입률이 21.7%로 전년보다 4.6%p가 증가하였다. 이는 벼 품목의 보장범위 확대로 인한 보험가입률의 증가가 전체 가입률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1-1-1]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현황(2001~2015)

(단위 : 개, %, 천호, 천ha,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험 품목	품목수 (누계)	2	6	6	6	6	7	10	15	20	25	30	35	40	43	46
	신규 품목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	-	-	떨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시설) 수박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 딸기, 토마토, 오이, 참외, 대추	(시설)못 고추, 호박, 국화, 장미, 복분자	(시설)파프 리카, 멜론, 인삼, 오디, 차	표고버섯, 노타리 버섯, 시설 (시금치, 부추, 상추)	시설 (배추, 가지, 파)	시설 (무, 배추, 카네 이센)
대상재해		태풍, 우박, 동상해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나무피해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추가 품목은 전위험 ¹⁾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인삼 특정 위험	좌동	좌동	좌동
국고 지원율	보험료	30	50	50	50	61.3	58.4	55.6	52.8	50	50	50	50	50	50	50
	운영비	50	70	73	9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보험 가입 실적	농가수	8	19	16	24	26	27	29	33	46	53	68	75	95	89	122
	면적	4	11	11	18	20	21	24	26	48	53	87	108	160	134	185
	가입률	17.5	18.3	15.2	18.2	23.4	24.0	22.7	23.1	12.5	13.0	13.6	13.7	19.1	16.1	21.7
보험료	총보험료	34	80	178	331	568	618	581	573	643	897	1,161	1,578	2,370	2,343	3,148
	환급금차감후보험료	30	80	172	321	548	576	557	554	625	864	1,110	1,516	2,269	2,340	3,142
	위험보험료	...	...	...	...	...	...	...	...	...	...	...	1,375	2,057	2,166	2,933
보험금 지급 실적	농가	0.4	6.9	10.1	3.2	5.9	5.2	7.2	3.4	8.7	14.3	19.6	46.3	8.6	10.8	6.4
	지급액	14	347	500	136	239	211	615	249	662	903	1,326	4,910	451	1,450	529
	손해율 ²⁾	45.7	433.4	290.8	42.3	43.5	36.6	110.4	45.0	105.8	104.6	119.5	357.1	21.9	66.9	18.0

주 : 1) 전위험 : 병충해를 제외한 모든 재해(자연재해, 화재 등)를 보상하는 방식.(현재 종합위험방식과 동일)

2) 손해율 :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보험금 ÷ 환급금차감후보험료, (2012년 이후) 보험금 ÷ 위험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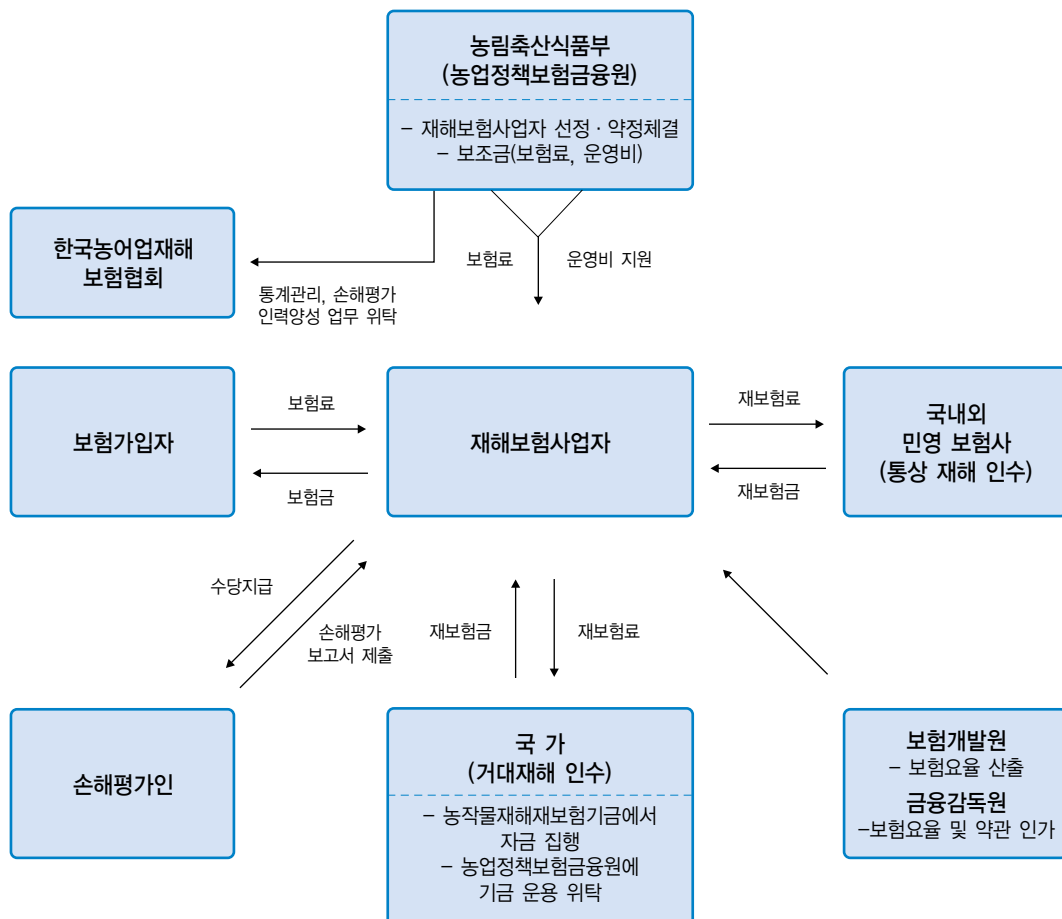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운영 체계

2.1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체계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및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별 보험요율과 국가재보험요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업자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국내외 재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함으로써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1]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추진 체계도



2.2 기관별 주요 역할

농작물재해보험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재보험요율 책정, 재해보험사업자 관리감독, 거대재해 인수(손해율 150~180% 이상), 농업재해보험기금 집행 및 운용(위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재해재보험 기금 운용,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보험상품 개발(보험요율, 보험약관), 보험판매(가입자), 손해평가(평가 의뢰)
국내외 재보험사	재보험 인수
손해사정법인, 손해평가인	보험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3. 추진 절차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환류 등 표준 프로세스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농업재해보험 제도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1. 사업신청 단계	세부사업 기본계획(사업 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 (2.10일까지)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 협의회 운영,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 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 재해보험 보험요율, 보험약관, 상품별 홍보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이하 "대리점") 등에 대한 세부실시 방안 교육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 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대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 - 대농업인·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 -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3. 자금배정 단계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자금배정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자금배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 보험 가입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 운영비 사용계획서(집행계획) 수립 - 지출항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에 통보 - 자금배정 신청 - 재해보험사업자는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배정 신청 - 자금집행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 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 관리 점검 - 점검대상 : 재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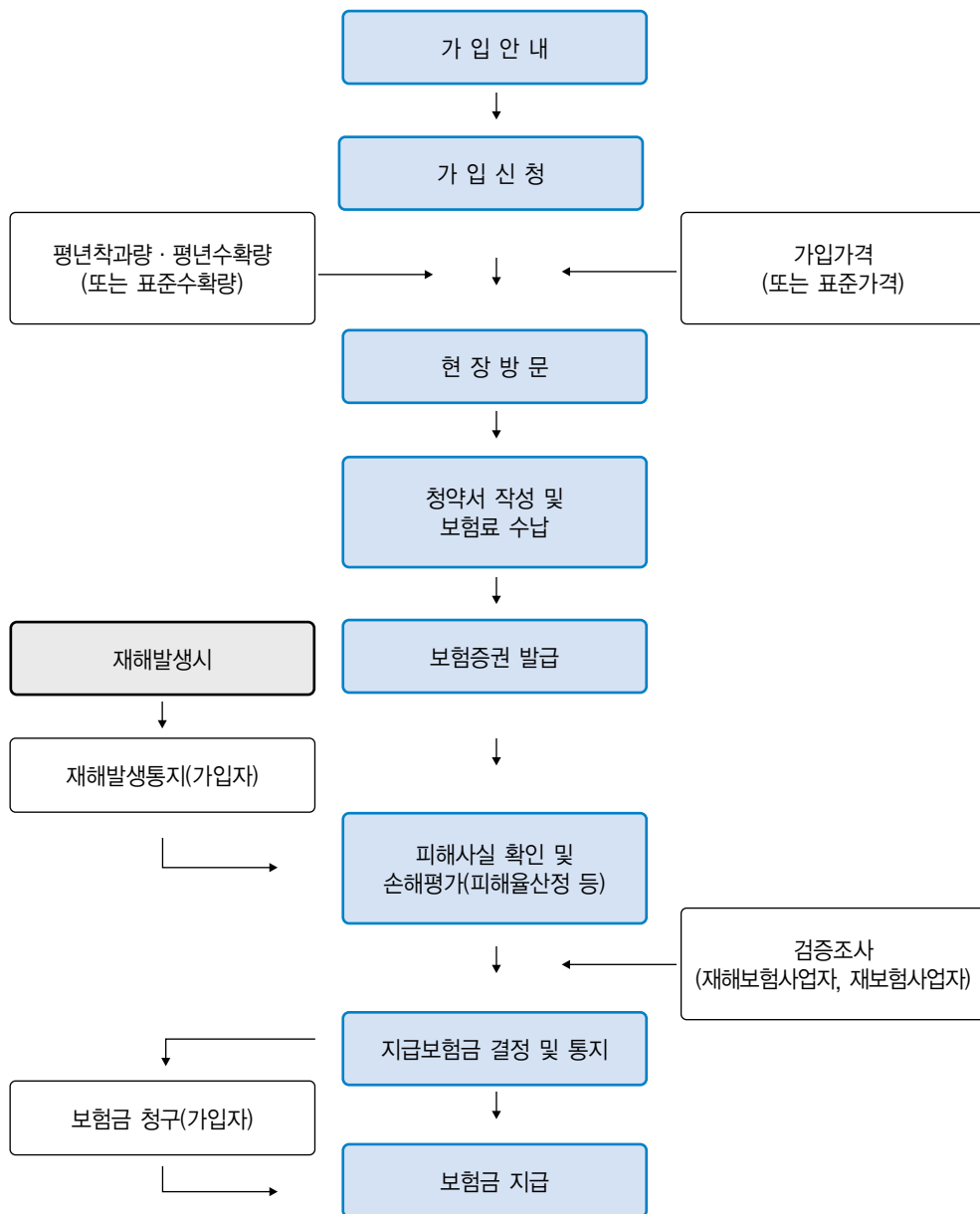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 점검항목 - 자검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 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 사업실적 : 농작물재해 보험 사업실적 등		
〈제 재〉	부당·위법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해당 기관의 징계,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 등에게 통보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5. 성과측정 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대상품목 증가 수(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계획에 따름) - 성과지표 측정(매년) :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 가입농가 수 및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 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사업기간 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가. 원 칙 - 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및 기간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매년 1월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 보험가입률,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 보조금 집행 현황, 민원 발생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3월 중)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매년 12월 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환 류〉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		

3.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안내에서 부터 청약, 재해발생통지,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2]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도



4.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4.1 특정위험 보장방식¹⁾ 상품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사과	2001	2001	2003	특정	(주계약) 태풍, 강풍, 우박 (특약 ²⁾)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장 (10만원/1주)	15, 20, 30 (특) 나무보장 : 3%
배	2001	2001	2003	특정		
단감	2002	2004	2004	특정		
딸은감	2006	2008	2008	특정		
감귤	2002	2004	2004	특정		

4.2 종합위험 보장방식³⁾ 상품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대추	2010	2013	2013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밤	2007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고추	2008	2014	2014	종합 생산비 ⁴⁾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자기부담금 잔존보험가입금액 5%
벼	2009	2013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 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10, 15, 20, 30, 40
옥수수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고구마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감자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10, 15, 20, 30, 40
참다래	2007	-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보장(5만원/1주)	10, 15, 20, 30, 40 (특) 보험가입금액의 5%
콩	2008	2011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표고버섯	2013	-	-	특정 생산비	(주)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특) 화재	30만원 또는 보험가액 (1동 단위)의 10% 중 작은 금액 (버섯재배사) 소손해면책금 10만원(작물)

주 : 1) 특정위험 보장방식 : 태풍(강풍) 우박과 봄동상해·가을동상해·집중호우·나무보상 등 특정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만을 보상하는 상품

2) 특약은 주 계약에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선택 가입이 가능

3) 종합위험 보장방식 :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화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4) 생산비보장방식 : 보험대상목작물이 시설작물 또는 농업용시설물인 경우는 생산비 방식으로 보험가입금액(생산비)의 100% 보장하는 방식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본부

제1장 농업재해보험 제도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과실손해	(주) 발아기 ~ 수확기 종료(11월 30일한) (특) 봄동상해 : 발아기 ~ 5.31 가을동상해 : 9.1 ~ 11.10 (단감 · 뽕은감 5, 10, 15 중 선택) 집중호우 · 나무보장 : 주계약 동일	2.23~4.3 (단, 봄동상해 특약 3.20일까지)	전국	사과
				배
				단감
				뽕은감
				감귤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수확감소	신초발아기 ~ 수확기 종료(10.31한)	4.1~4.24	전국	대추
수확감소	발아기 ~ 수확기 종료(10.31한)	4.1~4.24	전국	밤
피해금액 30만원 이상	계약체결일 24시 ~ 정식일 이후 140일째 되는 날 24시	(전남 · 제주) 4.13~5.15 (이외지역) 4.20~5.22	전국	고추
재이앙 경작불능 ¹⁾ 수확감소	이앙완료일 24시 ~ 이앙완료일로부터 20일째 날 이앙완료일로부터 21일째되는 날 0시 ~ 출수기 이앙완료일 24시 ~ 수확기 종료(11.30한)	4.20~6.26	전국	벼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9.30한)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5.4~6.12	전국	옥수수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10.31한) 계약체결일 24시 ~ 6월 30일	5.4~5.29	전국	고구마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강원 10.31한) 계약체결일 24시 ~ 6월 30일	(봄) 5.18~6.12 (가을) 7.20~8.21	전국	감자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주) 꽃눈분화기 ~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11.30한) (특) Y년 7월 1일 ~ (Y+1)년 6월 30일 (Y는 해당품목 판매개시일이 속하는 연도)	6.1~7.10	주산지	참다래
수확감소 경작불능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11.30한)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6.1~7.31	전국	콩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피해금액 10만원 이상(작물)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부담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시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	6.1~7.10	주산지	표고버섯

주 : 1) 경작불능 : 경작불능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되며, 이 경우 환급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음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마늘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매실	2009	2012	2012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인삼	2012	-	-	특정 생산비	(주) 태풍(강풍), 폭설, 집중호우, 침수, 화재	20, 30, 40
					(특) 해가림시설 선택가입	(특) 가입금액의 1%
오디	2012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차	2012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10, 15, 20, 30, 40
느타리 버섯	2013	-	-	특정 생산비	(주)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30만원 또는 보험가액 (1동 단위)의 10% 중 작은 금액 (버섯재배사)
					(특) 화재	소손해면책금 10만원
복분자	2011	-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양파	2008	2011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20, 30, 40
자두	2007	-	2011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5만원/1주)	20, 30, 40 (특) 나무 : 5%
포도	2002	2010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보상(3만원/1주)	10, 15, 20, 30, 40 (특) 나무 : 5%
복숭아	2002	2010	-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특) 나무손해보상(10만원/1주)	20, 30, 40 (특) 나무 : 5%
배 (적과전 종합)	2013	-	-	적과전 종합	(주) 적과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적과종료 이후 :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특) 가을동상해, 나무손해 (10만원/1주)	15, 20, 30 (특) 나무 : 5%
단감 (적과전 종합)	2014	-	-			
사과 (적과전 종합)	2015	-	-			

제1장 농업재해보험 제도

보험금지급	보험기간	판매시기	대상지역	품목
재파종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 ~ 10월 31일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개시 시점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6.30한)	(난지형) 10.5~11.30 (한지형) 11.2~11.27	전국	마늘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7.31한)	11.2~11.27	전국	매실
인삼손해 인삼시설손해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10월 31일 24시 * 연근별 가입액은 생산비기준으로, 피해율은 연근별 기준 수확량 기준으로 산출	11.2~11.27	주산지	인삼
과실손해	계약체결일 24시 ~ 결실완료 시점(5.31한)	11.2~11.27	주산지	오디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 ~ 햃자 수확 종료(5.31한)	10.5~11.6	주산지	차
농업용시설물 및 부대시설 피해금액 10만원 이상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부담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 납입시 ~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종료일 24시	11.2~11.27	주산지	느타리버섯
과실손해	계약체결일 24시 ~ 수정완료 시점(5.31한)	11.2~11.27	주산지	복분자
경작불능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 ~ 이듬해 3월 31일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6.30한)	11.2~11.27	전국	양파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9.30한) (특) Y년 12월 1일 ~ (Y+1)년 11월 30일	11.2~11.27	전국	자두
수확감소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기 종료(10.10한) (특) Y년 12월 1일 ~ (Y+1)년 11월 30일	11.9~12.4	전국	포도
수확감소 (특) 나무손해	(주) 계약체결일 24시 ~ 수확 종료(10.10한) (특) Y년 12월 1일 ~ (Y+1)년 11월 30일	11.2~11.27	전국	복숭아
과실손해 (특) 나무손해	(주) 적과종료 이전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종료 시점 (6.30한) 적과종료 이후 : 적과종료 이후 ~ 수확기 종료 (10.31한) (특) 가을동상해 : (Y+1)년 9월 1일 ~ (Y+1)년 10월 31일 (특) 계약체결일 24시 ~ 10월 31일	11.2~11.27	주산지 (30개 시·군·구)	배 (적과전종합)
과실손해 (특) 나무손해	(주) 적과종료 이전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종료 시점 (7.30한) 적과종료 이후 : 적과종료 이후 ~ 수확기 종료 (11.30한) (특) 가을동상해 : (Y+1)년 9월1일~종기선택 (11월 5일·10일·15일) (특) Y년 12월 1일 ~ (Y+1)년 11월 30일	11.2~11.27	주산지 (12개 시·군·구)	단감 (적과전종합)
과실손해 (특) 나무손해	(주) 적과종료 이전 : 계약체결일 24시 ~ 적과종료 시점 (6.30한) 적과종료 이후 : 적과종료 이후 ~ 수확기 종료 (10.31한) (특) 가을동상해 : (Y+1)년 9월 1일 ~ (Y+1)년 10월 31일 (특) 계약체결일 24시 ~ 10월 31일	11.2~11.27	주산지 (3개 시·군·구)	사과 (적과전종합)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4.3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품목	연혁			보장 방식	대상재해	자기부담비율(%)
	도입	전국	본사업			
농업용 시설물	2011	2014	2014	종합	(주) 자연재해, 조수해 (특) 화재	30만원 또는 보험가액 (1동 단위)의 10% 중 작은 금액 (특) 자기부담금 없음
시설 딸기	2010	2013	2013	종합 생산비	(주) 자연재해, 조수해 (특) 화재	소손해면책금 10만원
시설 오이	2010	2013	2013			
시설 토마토	2010	2013	2013			
시설 참외	2010	2013	2013			
시설 풋고추	2011	2013	2013			
시설 호박	2011	2013	2013			
시설 국화	2011	2013	2013			
시설 장미	2011	2013	2013			
시설 수박	2009	2013	2013			
시설 멜론	2012	2015	2015			
시설 파프리카	2012	2015	2015			
시설 상추	2013	2015	-			
시설 부추	2013	2015	-			
시설 시금치	2013	2015	-			
시설 배추	2014	2015	-			
시설 가지	2014	2015	-			
시설 파	2014	2015	-			
시설 무	2015	-	-			
시설 백합	2015	-	-			
시설 카네이션	2015	-	-			

고
정
자

공
민
장
비

국
회

제2절 가축재해보험

1. 개관

1.1 사업목적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제도를 이용하여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보험이다.

1.2 근거법령

가축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다.

1.3 사업대상자

가축재해보험 사업자(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4 추진경과

연 도 별	주 요 내 용
1956년	• 농업은행 가축공제사업 수행 “농경우공제사업”
1961년	• 농업은행 → 농협으로 승계
1963년	• 임의가입 허용
1964년	• 젖소 공제 실시
1981년	• 일반가축공제(축협중앙회), 특수가축공제(농협) 실시
1997년	• (구)축협에서 정부 지원 하에 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 • 가축공제 활성화 및 축산농가 부담경감을 위해 납입공제료의 50%를 축산업발전기금에서 지원
2000년	• 돼지, 말 보험 실시
2002년	• 닭 보험 실시
2004년	• 오리 보험 실시
2005년	• 꿩, 메추리 보험 실시
2006년	• 칠면조, 사슴 보험 실시
2007년	• 가축공제(보험) 경쟁체제 도입 · 민영보험사(KB컨소시엄) 참여 허가 • 거위, 타조 보험 실시
2008년	• 양(염소) 보험 실시
2010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으로 정부 재정지원은 축산업발전기금에서 ‘농특회계’로 변경 • 꿀벌, 토끼 보험 실시
2011년	• 관상조 보험 실시
2012년	• 오소리 보험 실시

1.5 국고지원

가축재해보험은 축산 농업인이 보험가입시 납부하는 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별 20~4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다만, 말의 경우 마리당 가입금액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되,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의 70%까지 가입금액을 산정하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1.6 연도별 보험사업 운영 현황

가축재해보험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소’ 1개 축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보험대상 축종을 확대한 결과 2012년부터는 16개 축종(보험화율 80%)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입마리수와 가입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2015년 기준 12.3천 농가에서 219,940천 마리를 가입함으로써 90.7%의 높은 가입률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보험금 지급건수와 지급액도 매년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15년도 보험금지급 건수는 12.6천 건으로 2008년 2,010천 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손해율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인 1998년은 218.9%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최근 5년간 손해율은 100% 미만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며, 2015년에는 98.1%의 손해율을 보이고 있다.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표 1-1-2] 연도별 가축재해보험 운영 현황(1997~2015)

(단위 : 개, %, 천호, 천마리, 억원, 천건)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보험 축종	축종수 (누계)	1	1	1	3	3	4	4	5	7	9
	신규도입 축종	소	-	-	돼지, 말	-	닭	-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대상재해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국고 지원율	보험료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운영비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보험 가입 실적	농가수	0.2	0.1	0.2	2.0	4.4	7.3	9.0	7.9	8.2	9.0
	마리수	35	30	33	631	2,318	11,899	21,375	28,404	45,845	53,300
	가입률	0.3	0.3	0.3	6.1	21.7	10.6	19.4	24.1	37.9	40.7
보험료	총보험료	8	7	10	31	88	164	233	257	310	385
	환급금차감후보험료	8	7	10	31	84	161	229	253	307	379
	위험보험료	7	6	8	24	67	129	183	203	245	304
보험금 지급 실적	건수	0.4	1.6	1.1	1.8	3.4	6.8	12.8	12.2	9.1	11.4
	지급액	3	12	10	17	42	120	224	211	185	273
손해율		49.1	218.9	115.1	69.2	61.8	93.5	122.3	103.9	75.2	90.0

(단위 : 개, %, 천호, 천마리, 억원, 천건)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험 축종	축종수 (누계)	11	12	12	14	15	16	16	16	16
	신규도입 축종	거위, 타조	양 (염소)	-	꿀벌, 토끼	관상조	오소리	-	-	-
대상재해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풍수해 화재, 질병 등
국고 지원율	보험료	50	50	50	50	50	50	50	50	50
	운영비	50	50	50	50	50	50	50	50	50
보험 가입 실적	농가수	9.9	9.9	9.6	9.6	9.9	11.2	11.4	11.3	12.3
	마리수	57,535	60,448	63,193	81,614	98,860	128,860	163,325	218,517	219,940
	가입률	43.9	45.9	35.4	43.0	52.4	69.1	77.3	89.1	90.7
보험료	총보험료	483	547	600	675	812	1,002	1,053	1,014	1,120
	환급금차감후보험료	478	542	597	657	774	979	1,025	983	1,099
	위험보험료	383	435	478	525	619	783	820	789	902
보험금 지급 실적	건수	15.1	20.0	20.0	17.1	13.2	16.4	15.2	10.6	12.6
	지급액	367	504	443	450	494	693	657	693	885
손해율 ¹⁾		95.9	115.9	92.8	85.7	79.9	88.5	80.2	87.9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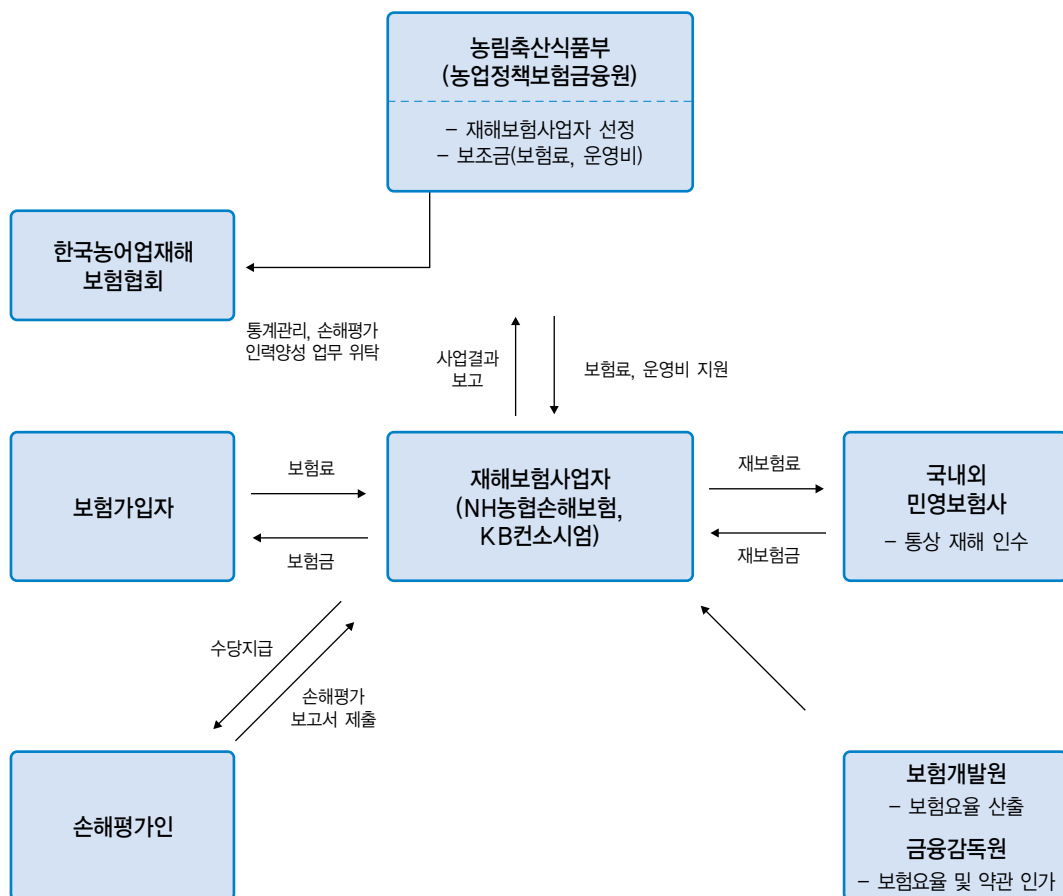
주 : 1) 손해율 : 보험금 ÷ 위험보험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운영 체계

2.1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체계

가축재해보험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별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국내외 재보험사는 재보험을 인수하여 위험분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1-1-3] 가축재해보험사업 추진 체계도



2.2 기관별 주요 역할

가축재해보험사업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재보험요율 책정, 농업재해재 보험기금 집행 및 운용(위탁)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상품의 연구 및 보급,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손해평가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가축재해보험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금융감독원	보험요율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보험요율 산출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보험상품 개발(보험요율, 보험약관), 보험판매(가입자), 손해평가(평가 의뢰)
손해사정법인, 손해평가인	보험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3. 추진 절차

가축재해보험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진행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 자금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사업평가, 환류 등 표준프로세스 단계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농업재해보험 제도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재해보험 사업추진계획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 까지 농업정책보험 금융원 및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통보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연구 및 상품 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점검회의 개최, 대농업인 재해보험 제도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 실시(법 제8조)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 시달 내용을 근거로 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세부사업계획을 농업 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지역 대리점, 농협, 낙·축협 영업점 등에 시달하여 축산농가에서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시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사전 협의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전산화에 따른 업무 추진상 문제점, 개선 사항 등 지자체 의견 수렴 회의를 개최하고 11월말까지 확정된 지방비 지원절차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시도에 통보	-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 상품개선협의회 운영, 위험관리점검회의 개최, 농업인·지자체·지역 대리점에 대한 제도 홍보 등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보한 지방비 지원절차에 따라 사업관리 - 다음연도 시도 및 시군구 예산, 지원비율, 농가당 한도, 지원두수 한도 등 지원기준을 파악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12월말까지 통보 - 지자체별 예산은 재해보험사업자 사업실적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정한 후 함께 통보하고 배정된 예산이 90% 이상 소진될 경우 재배정 - 매월 지원된 지방비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익월 말일까지 정산완료 및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보험사업자 점검·관리 -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방비 지원기준을 변경요청한 경우 (시행일 1주일 전까지 농공원에 통보) 보험사 전산망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해보험 사업자에 통보 -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의 월보제출 실적과 지자체 매월 정산요청 내역과 시스템상 지자체 보험 가입실적의 합계가 일치되도록 관리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사업의 세부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하고, 지역 대리점과 농·축협 등 판매직원, 손해평가인 등에 대한 교육·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가축보험 제도개선 사항 관련 축종별 단계, 지자체, 낙·축·농협, 수의사협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설명회 개최 -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평가요령, 응대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전체 영업점에 가축보험 실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부착·비치, TV 광고, 보도자료, 기획기사, 기고 등 홍보 실시 -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중 사업추진 - 대상가축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사슴, 양산양, 면양), 꿀벌, 토끼, 오소리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월 말 기준, 익월 10일까지 가축재해보험 축종별·시도별 가입현황 및 보험금 지급실적(계약건별 상세내역 첨부), 시도·시군구별 지방비 정산요청 및 정산처리 실적 등을 첨부한 월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재해보험사업자는 가축재해보험 지방비 전산화를 추진하고 보험가입시 국비, 지방비를 제외한 농가부담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매월 보험실적(계약현황, 보험료, 환급금, 지급 현황 등)을 익월 10일까지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정산요청하여야 함, 지자체는 익월 말일까지 정산처리 -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라 자체 시스템에 개인별·지자체별·영업점별 보험가입현황, 시도 및 시군구비 지원현황 및 환급·추징 등 계약변경현황 등을 관리하고 관련 자료 송부 - 시스템상 송부한 자료와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자체에 송부한 월보가 일치되도록 현황 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지자체에서 지원된 보조금 정산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시스템상 송부하는 자료 추가
-------------------	---	--	---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3. 자금배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가축재해보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을 배정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수시) ----- 재해보험사업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경우) ▼ 자금배정(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집행 재해보험사업자 - 전년도 사업시행자의 보험 가입율과 세부 집행내역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월별 가입현황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금 교부	-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 현황서,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 보고 -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한 축종별 가입 실적을 감안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 및 자금 집행 - 자금배정 신청서에는 보조사업자, 사업목적 및 내용, 사업기간, 교부신청액 및 교부조건 등 포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관리 체계화 (점검) 농식품부(재해보험정책과)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손보사(정책보험팀) (조사) 손보사(감사 · SIU) (수사) 경찰청(수사 1과) · 금융감독원(손해보험조사팀)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사고 위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관리 점검회의」 개최 - 개최시기 : 분기별, 필요시 수시 개최 - 참석범위 :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사업시행자, 손해평가법인 등 - 점검내용 :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가 '경계·심각단계'의 보험금 청구 건으로 재해보험사업자가 상정 요구한 안건, 가축재해보험 실태 점검·조사, 보험사고 혐의자 수사의뢰, 기타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재해보험사업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실태점검 - 점검대상 : 보험사업자,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 보험가입자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함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체계」에 의해 관리하여야 하며, 경계 단계 이상인 경우는 실태점검 실시 또는 수사 의뢰 - 신호단계(보험금 청구횟수 또는 평균손해율)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 농가별 개인/법인, 지점별 구분, 보험사고 횟수별 위험단계 조정
----------------------	--	---	---

구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사 고 발 생 수	개인	1~3미만	3~5미만	5~7미만	7이상
	법인	3~5미만	5~7미만	7~10미만	10이상
	지점	분기별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평균손해율 초과	평균손해율 150%초과
조치사항				실태점검	실태점검 또는 수사의뢰

제1장 농업재해보험 제도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재해보험사업자
4.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보험계약 체결현황 및 보조금 등 자금집행실적 및 운영현황, 국고보조금 지원의 적합 여부, 부가보험료(사업운영비, 사업수수료) 세부항목별 집행 실적과 사용내역, 보험사업 목적외 사용,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가축재해보험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자체 세부사업계획 이행여부 등 - 점검결과 : 점검결과 및 조치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업인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고 위험관리 신호 체계」 중 경계·심각 신호단계의 보험금 청구가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매분기별 또는 필요시 위험관리 점검회의에 상정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고발생횟수 또는 평균손해율 초과로 경계이상 단계인 개인, 법인, 지점에 대하여 자체 실태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분기말까지 실태점검을 실시 - 자체 실태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농업정책보험 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제 재〉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자 등의 부당 사유가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징계 조치, 해당 계약자(농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 등에게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험사고 목적물에 대한 불법 진단·검진 하거나 공모한 수의사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통보	• 재해보험사업자,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위법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재해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 등 영업점 및 사업대상자(농업인)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 기타 악정사항 미이행 등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기 등 보험사고 관련 보험계약자(피해보험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 등 실시 - 보험사고 관련 해당 대리점·영업점과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각각 수수료 감액 조치 등의 제재를 실시한 경우에 그 결과 및 관련된 수의사 명단 등을 월별 추진실적 보고 시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보험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할 전체 영업점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5. 성과측정 단계 〈성과지표측정〉	• 매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의 전년도 경영성과 평가 - 주요평가지표 : 축종별 사육두수 및 가입두수 - 성과지표 측정(익년도 1월)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실적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방문·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주 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 - 조사시기 및 대상 : 사업기간 중, 농업인 및 가축재해보험 관련자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지)조사 - 결과제출 :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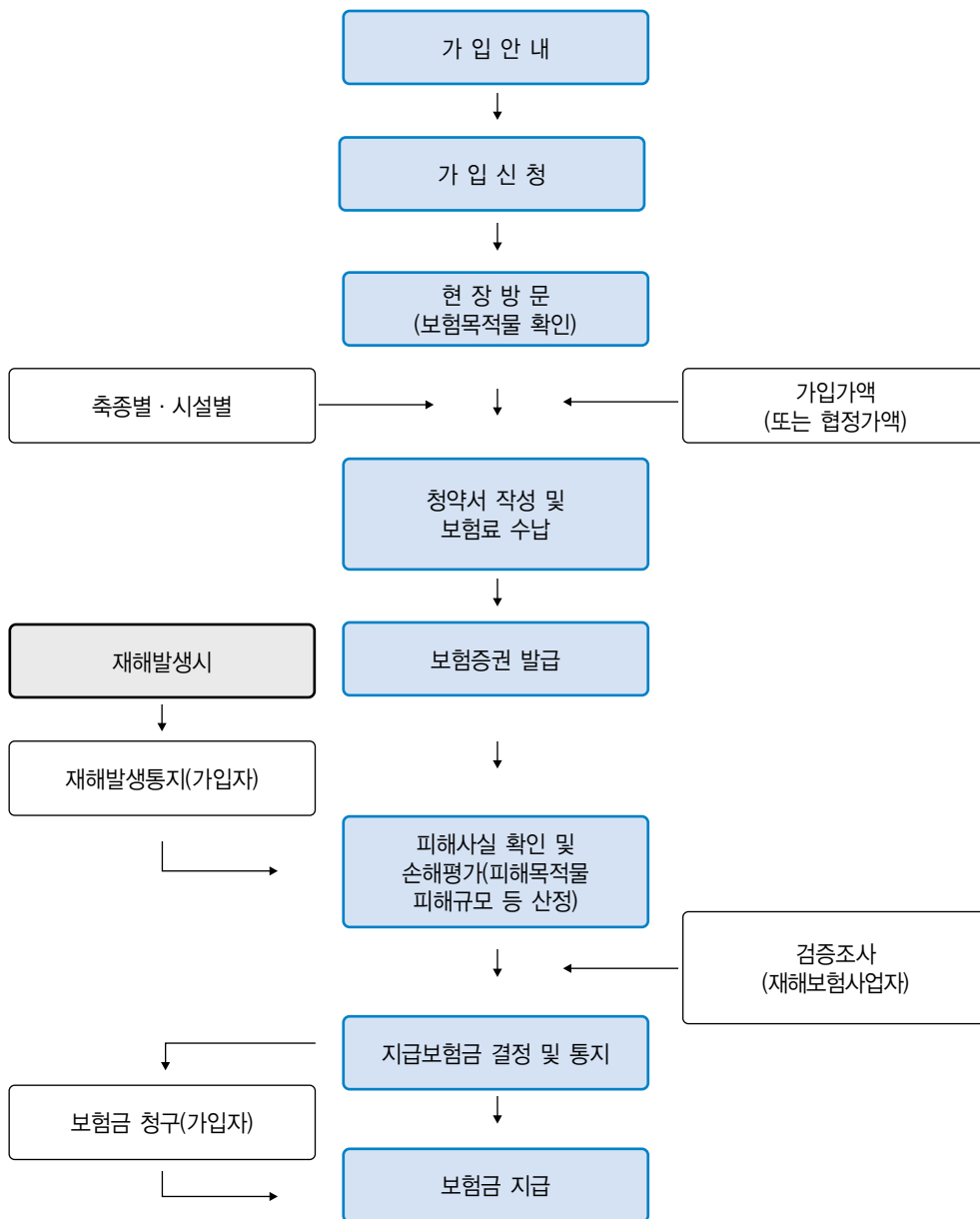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가축재해보험 사업계획으로 설정된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미흡·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평가기간 및 평가대상 : 매년 1월중, 재해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축종별 사육두수 대비 가입두수, 보조금 집행 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사업시행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 (1월 중) - 사업시행자는 매년 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축종별 가입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익년도 1월 10일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사업시행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3.2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내에서부터 청약, 재해발생통지,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4]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도



4. 가축재해보험 상품(16개 축종)

❖ 소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소	주계약	한 우, 우, 젖 소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급성고창증 및 젖소의 유량감소로 긴급 도축하여야 하는 경우 ※ 젖소 유량감소는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하여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소 도난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60%, 70%, 80% 보상 중 선택
		종모우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정액생산 능력 저하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 인해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특약	소도체 결함보상	•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경매시까지 발견된 도체의 결함(근출혈, 수종, 근염, 외상, 근육제거 등)으로 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 돼지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돼지	주계약	돼지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질병위험보장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 중 적은금액
	특약	축산휴지 위험보장	• 풍재·수재·설해, 화재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100%까지 보상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100, 200, 300만원
		폭염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특약		• 설해 담보 제외('15년 4월 시행)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 말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말	주계약	경주마, 육성마, 중빈마(암), 중모마(수)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로 인한 폐사 • 부상, 난산, 산욕마비, 산통으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할 손해 및 불임 판정된 경우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 단, 경주마는 경기장외는 가입금액 70%까지 보상 - 경기장내는 95%, 90%, 80%, 70% 보장 중 선택 ('15년도 중 시행예정)
		말운송위험담보	• 말 운송 중 발생하는 주계약 보상사고	
	특약	씨수말 번식첫해담보	• 중모마(수컷)의 번식장에 보상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 가금(8개 축종 :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칠면조, 관상조)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가금	주계약	모든 가금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95%까지 보상
		전기적장치 위험담보	• 전기장치 고장에 따른 가축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한 금액 * 자기부담금 : 100, 200, 300 만원
	특약	폭염추가특약	• 폭염에 의한 가축 피해 보상	
		협정보험가액	• 협의평가로 보험 가입한 금액을 시가와 관계없이 가입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평가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설해부담보특약		• 설해 담보 제외('15년 4월 시행)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 기타 가축(5개 축종 :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구 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기타 가축	주계약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사고 발생 시 동물사체 등 잔존물 처리비용 등 기타 협력비용	• 사슴, 양, 오소리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꿀벌, 토끼는 95%)
	특약	사망·긴급 도축 확정보장 (사슴, 양, 오소리)	•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및 사고(풍재·수재·설해, 화재)등으로 인한 폐사 • 부상(사지·경추골절, 탈골), 난산, 산욕마비로 인하여 즉시 도살하여야 하는 경우 ※ 신규가입일 경우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	•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 80%까지 보상
축사	특약		• 풍재·수재·설해, 화재에 의한 손해	• 풍재, 수재, 설해 : 50만원 차감 후 보상
	화재대물배상특약		• 축사 화재로 인접농가 피해 시 손해 보상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제3절 농업인안전재해보험¹⁾

1. 개관

1.1 사업목적

농업인이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여건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험이다.

1.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한다.

1.3 사업대상자

보험사업의 대상자는 농(임)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등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농(임)업인안전보험은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대상이고, 농작업 근로자보장보험은 보험계약자인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 일용 근로자를 고용한 만 20~84세의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여야 한다.

주 : 1) 농·임업인안전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을 포괄하여 통칭하는 용어이다.

현행 농업인재해보험은 종전 농협중앙회의 공제사업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별도의 허가 없이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수행하여 왔으나, 2012년 3월 2일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법인인 NH농협생명과 NH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였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명칭인 “공제”를 “보험”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1.4 추진경과

농업인은 농작업과 관련한 사고가 빈발함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의의 사고시 농업인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였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자체적으로 1989년부터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1991년부터는 농기계종합공제 사업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1996년부터 농업인 복지증진 차원에서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보험품목 및 보상한도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법적 근거 강화를 위한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2015.1.6)을 제정하였다.

● 농(임)업인안전보험

연 도	주 요 내 용
1989년	• 농협중앙회 “농작업상해공제” 사업실시
1996년	• “농작업상해공제” 정부지원으로 농업인안전공제 도입 - 문민정부 대선공약으로 보험료의 50% 정부지원
2007년	• 임업인공제 실시
2012년	• 농·임업인안전보험으로 명칭 변경 - NH농협생명으로 사업자 변경
2014년	• 농업인안전보험 경쟁체제 도입·민영보험사(KB손해보험) 참여 허가
2015년	•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015.1.6) 제정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연 도	주 요 내 용
2009년	•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제도 도입 • 9개 시·군에서 시범사업 시작 - 김포, 춘천, 충주, 예산, 안동, 의령, 고창, 해남, 남제주 등
2010년	• 17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지역 확대 - 안성, 원주, 음성, 아산, 익산, 나주, 영주, 창원 등 추가
2011년	• 28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지역 확대 - 용인, 인제, 제천, 옥천, 공주, 논산, 순창, 김제, 순천, 김천, 함양 등 추가
2012년	• 40개 시·군으로 시범사업지역 확대 - 영동, 장성, 광양, 의성, 예천, 경산, 문경, 거창, 진주, 창녕, 김해, 부산 강서구 등 추가
2014년	• 본사업 실시(사업지역 전국으로 확대)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 농기계종합보험

연 도	주 요 내 용
1991년	• 농협중앙회 자체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사업 실시
1996년	• 농기계 6개 기종으로 농기계종합보험사업 시작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1997년	• 정부로부터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실시
2008년	• 가입대상 농기계 9개 기종으로 확대 - 광역방제기, 베일러, 항공방제기 등 3개 기종 추가
2009년	• 가입대상 농기계 12개 기종으로 확대 -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등 3개 기종 추가
2012년	• 대인, 대물, 자기신체담보 등의 특약 리모델링
2013년	•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자기부담금 다양화 - (기존)300만원 단일 → (변경)100, 200, 300만원 중 선택
2014년	• 국고 보험료 지원 변경 - 농기계손해(가입금액 기준 5,000만원까지 50% 지원)
2015년	• 대물배상담보 보상한도의 다변화 - (기존)2천만원 단일 → (변경)2,000, 5,000, 10,000만원 • 항공방제기 비행중 보상한도 개선 - (기존)1억원 고정 → (변경)계약자가 정한 보험가입 금액

1.5 보험별 운영 현황

● 농업인안전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인원수는 2011년(817천 명)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가입인원은 771천 명으로 전년보다 1.0% 감소하였다. 총보험료는 626억 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60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지급보험금은 478억 원으로 전년(488억 원)보다 감소하였고, 손해율 또한 89.8%로 전년(91.3%) 대비 1.5%p 감소하였다.

[표 1-1-3] 연도별 농업인안전보험 운영 현황(2001~2015)

(단위 : 개, 천건, 천명,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¹⁾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단위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보험 가입 실적	건수	663	676	705	690	711	658	695	719	744	754	758	747	745	720	712
	인원수	...	...	...	736	760	704	741	765	791	804	817	803	805	778	771
	가입률	...	...	...	39.5	40.7	37.7	44.6	45.8	48.4	50.4	53.8	52.5	55.7	55.2	56.1
보험료	총보험료	148	143	148	197	216	323	419	529	585	600	674	664	672	629	626
	위험보험료	...	...	...	167	183	275	355	449	496	509	572	562	579	535	532
보험금 지급실적	건수	13	12	14	12	13	14	17	20	22	23	25	26	33	36	32
	보험금	119	115	133	144	149	185	272	361	400	425	446	474	516	488	478
손해율 ²⁾		...	...	...	86.1	81.5	67.1	76.5	80.3	80.6	83.4	77.8	84.0	90.2	91.3	89.8

주 : 1) 2001~2003년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자료 중에서 발췌 정리

2) 손해율 : 보험금 ÷ 위험보험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NH농협생명 농축협사업부

● 임업인안전보험

2007년 이후 임업인안전보험의 가입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으나, 2015년의 가입건수는 44건으로 전년(523건)보다 크게 감소(△91.6%)하였으며, 2007년 이후 가장 적은 가입건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총보험료도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2015년 지급된 보험금은 179억 원으로 매우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이에 따른 손해율도 5,288.5%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4] 연도별 임업인안전보험 운영 현황(2007~2015)

(단위 : 개, 건,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단위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보험 가입 실적	건수	251	110	206	248	173	45	171	523	44
	가입률 ¹⁾	3.2	1.4	2.7	4.1	2.8	0.7	2.8	8.6	...
보험료	총보험료	13	5	15	18	15	4	15	47	4
	위험보험료	11	4	13	16	13	3	13	40	3
보험금 지급실적	건수	4	4	8	7	10	3	2	16	21
	보험금	2	5	8	5	13	4	2	63	179
손해율 ²⁾		13.9	134.5	60.0	32.3	100.4	127.3	18.3	157.3	5,288.5

주 : 1) 가입률 :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2005, 2010) 전업임가수(육림업, 벌목업, 양모업 제외) 기준으로 작성

2) 손해율 : 보험금 ÷ 위험보험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NH농협생명 농축협사업부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2009년 전국의 9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이후 2012년 까지 연차적으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였으며, 201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전국에서 판매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보험가입 건수는 5,736건으로 전년(5,674건)보다 1.1%가 증가하였고, 총 보험료는 70백만 원으로 전년(61백만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2015년 보험금 지급실적은 29백만 원으로 전년(16백만 원)보다 크게 증가하였지만 손해율은 48.5%로 전년 (37.9%)보다 10.6%p 증가하였다.

[표 1-1-5] 연도별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운영 현황(2009~2015)

(단위 : 개, 건, 명, 백만원, %)

농작업근로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사업단위		시범	시범	시범	시범	시범	본사업	본사업
보험 시행 시범 지역	지역수(누계)	9	17	28	40	40	전국	전국
	시·군·구명	김포, 춘천, 충주, 예산, 안동, 의령, 고창, 해남, 남제주	안성, 원주, 음성, 아산, 익산, 나주, 영주, 창원	용인, 인제, 제천, 옥천, 공주, 논산, 순창, 김제, 순천, 김천, 함양	영동, 장성, 광양, 의성, 예천, 경산, 문경, 거창, 진주, 창녕, 김해, 부산 강서구	좌동	전국	전국
보험 가입 실적	건수 ¹⁾	5	52	190	338	2,006	5,674	5,736
	피보험자수	7	196	1,268	1,954	2,006	5,674	5,736
보험료	총보험료	0.1	1.9	14.0	24.2	23.1	60.9	69.6
	위험보험료	...	...	...	20.0	19.1	42.6	59.2
보험금 지급실적	건수	-	-	3	5	11	16	26
	보험금	-	-	1.8	6.3	5.8	16.2	28.7
손해율 ²⁾		-	-	13.0	25.9	30.5	37.9	48.5

주 : 1) 가입건수는 2013년부터 피보험자 1명당 1건으로 계산함

2) 손해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보험금 ÷ 환급금차감후보험료, 2013년 이후 보험금 ÷ 위험보험료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농기계종합보험

1996년 농기계 6개 기종을 대상으로 농기계종합보험을 시작한 이후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3개 기종을 추가하여 현재는 12개 기종에 대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15년 가입건수는 52.1천 건으로 전년(43.2천 건)보다 약 20.5%가 증가하였다. 가입건수 증가에 따라 보험료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총보험료는 244억 원으로서 전년(202억 원)보다 20.9%가 증가하였다.

보험금 지급실적과 손해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의 보험금 지급실적은 211억 원이고 손해율은 88.9%를 나타내고 있다.

[표 1-1-6] 연도별 농기계종합보험 운영 현황(2001~2015)

(단위 : 개, 천건, %, 억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보험 대상 농기계	기종수 (누계)	6						9	12							
	신규 도입	경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SS분무기						광역 방제기, 베일러, 항공 방제기	농업용굴삭기, 농업용동력운반차, 농업용로더							
사업단위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보험 가입 실적	건수	12.5	9.2	10.1	6.3	8.5	10.4	12.2	14.1	27.9	31.7	29.0	32.9	40.2	43.2	52.1
	가입률	0.6	0.5	0.5	0.3	0.6	0.9	1.0	1.2	2.3	2.6	1.5	1.7	3.4	...	...
보험료	총보험료	12	10	11	9	13	21	28	33	71	99	115	130	169	202	244
	위험보험료	...	...	...	7	10	17	22	26	56	76	86	103	135	170	201
보험금 지급실적	건수	0.7	0.7	0.6	0.7	0.7	0.8	1.1	1.5	2.0	2.6	2.9	2.6	4.0	5.0	7.0
	보험금	13	11	13	12	13	16	22	35	61	70	77	96	134	167	211
손해율 ¹⁾		111.6	116.4	114.2	136.6	103	76.7	79.4	108.9	85.9	71.1	68.2	75.7	80.5	83.7	88.9

주 : 1) 손해율 : 보험금 ÷ 환급금 차감 후 보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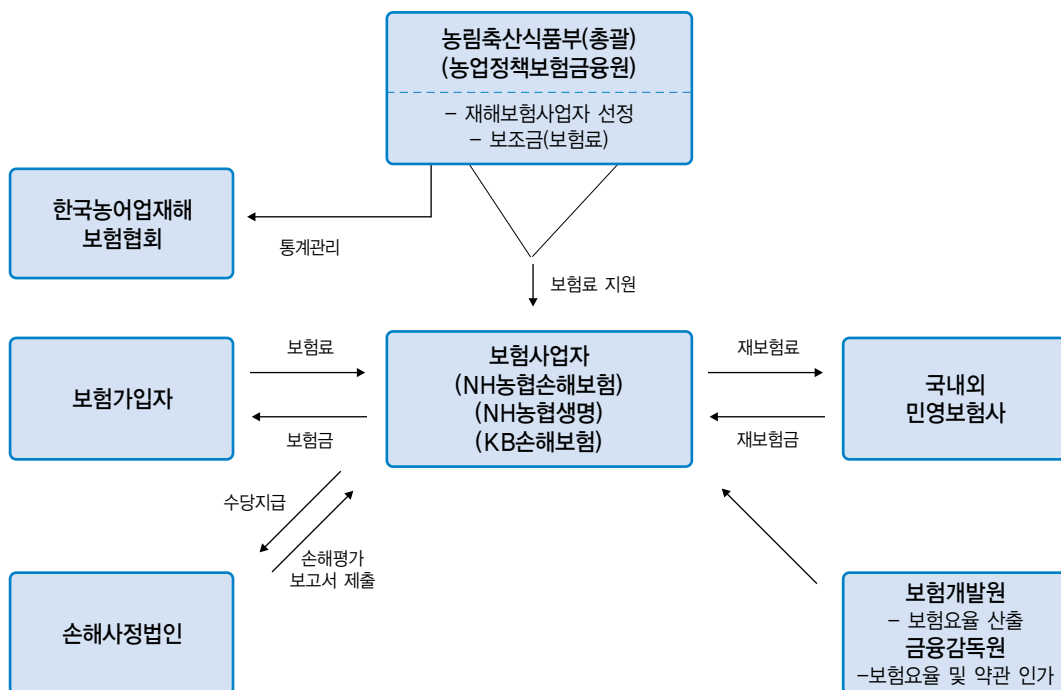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2. 운영 체계

2.1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추진 체계

농업인재해보험은 정책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등 국고보조금 지원,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보험사업자는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상품 판매, 보험목적물(농기계) 또는 피보험자의 손해평가 의뢰, 보험금 지급 등 실질적인 보험사업 운영주체가 되며, 보험개발원은 보험상품별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요율과 약관 등을 인가하고 있다.

[그림 1-1-5]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추진 체계도
(농·임업인, 농작업근로자, 농기계)



2.2 기관별 주요 역할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관련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기 관	주 요 역 할
농림축산식품부	• 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감독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 농업인안전재해보험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관리
금융감독원	• 보험료율 및 약관 인가
보험개발원	• 보험료율 산정
보험사업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 KB손해보험)	• 보험사업의 운용 및 관리
손해사정법인	• 보험사업자가 의뢰한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평가 실시

3. 추진 절차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시행 주체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을 미리 검토 한 후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사업자에게 시달하고, 진행 단계별 자금을 배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판매 실태를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3.1 표준프로세스(SP)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 수립, 준비, 사업비 배정, 이행점검, 성과측정 등 표준프로세스별 담당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자
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계상	- 접수한 예산 계상 신청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목적 달성에 적합한 자를 다음해 사업대상자로 선정한다 - 필요 금액을 예산 계상 시 반영 - 보험사업자의 사업이 부진하여 배정된 사업비를 90% 이상 집행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사업비 배정시 30% 이내에서 감액하여 배정 - 사업약정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 약정기간, 재정지원, 업무범위, 자료제출, 준수사항 등	- 자격요건 -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사업계획의 수립 - 보험사업자가 되려는 자는 매년 사업목적, 사업내용, 필요경비 등이 포함된 다음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예산계상 신청 - 수립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전년도 5월 31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예산 계상 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약정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 체결 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등 서류 제출	
2. 사업설계 및 준비		- 사업시행 - 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판매자에 대한 교육 -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 주요변경사항의 사전 협의 - 보험요율 및 보험약관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보험가입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에게 농작업의 범위, 보험금 지급 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함 - 청약서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농업인안전보험 농가계 종합보험, 농작업 근로자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농림업인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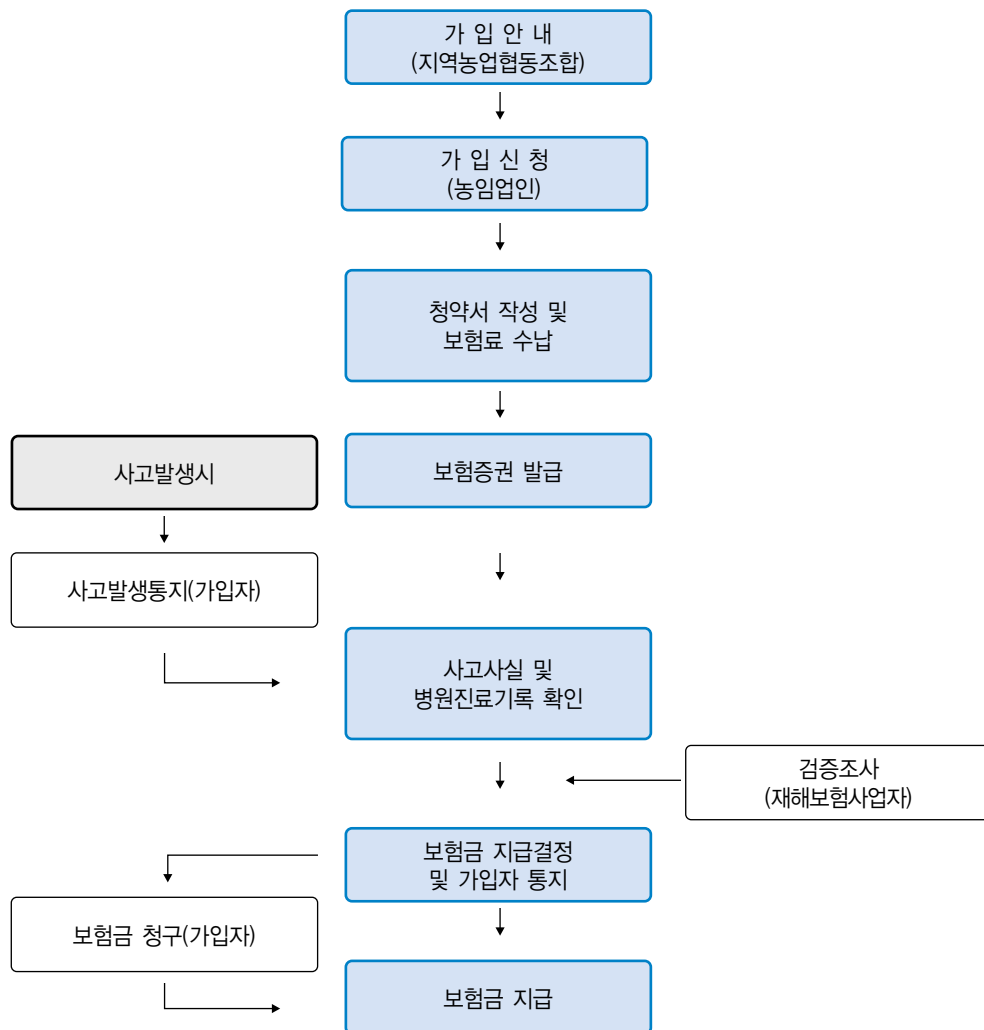
제1장 농업재해보험 제도

단 계 별	농림축산식품부	보험사업자	보험가입자
3. 보험가입		- 국고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만원발생 방지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4. 보험금의 지급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 - 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지급 •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분쟁해결제도 및 가구를 설치·운영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사업자에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5.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분기 시작 전 보험사업자로부터 사업비가 신청되면 예산 및 자금배정 • 보험사업자가 배정된 사업비를 반납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배정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기준에 따라 매분기 시작 10일전 까지 사업비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시 국고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함으로써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연도 말까지 배정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미집행 사유를 명시하여 9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반납 -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6. 이행점검	• 보험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및 일정 : 보험 판매자(대리점 등),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보험사업자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보험가입 청약서 등 확인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지원 내역 등을 보험 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대리점 등)의 보험 판매 실태를 점검	
7. 성과측정	•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다음해 1월 보험사업자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만족도 조사(설문지 방법)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보험사업자는 사업기간 중 현장방문·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3.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의 가입 안내에서부터 청약, 사고발생통지, 사고사실 확인 및 병원진료 기록 확인,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는 <그림 1-1-6>과 같다.

[그림 1-1-6]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절차도



4.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상품

4.1 농업인안전보험 상품(3개 보험)

구 분		(무)NH농업인안전보험Ⅱ ¹⁾	(무)NH임업인안전보험Ⅱ	(무)NH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Ⅱ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입일		1996. 1. 1	2007. 8. 1	2009. 10. 1
사업형태		본사업		
사업지역		전국	전국	전국
대상		만15 ~ 84세의 농업인	만15 ~ 84세의 임업인	만20 ~ 84세 일용근로자
보장내용	주계약	유족위로보험금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진단급여금 치료급여금 수술급여금	유족위로보험금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입원급여금 진단급여금 치료급여금 수술급여금	농작업재해사망보험금 일(월)사병사망보험금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농작업재해장해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 농작업재해골절급여금 농작업재해입원급여금 농작업재해치료급여금
	특약	장제비지원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임작업재해보장특약	-	-
보험가입자		농업인	임업인	농업인 및 영농법인
가입단위		개인, 부부	개인	개인
보험기간		1년		1일 ~ 89일
상품구성		• 주계약 • 특약	• 주계약	
가입선택	주계약	의무가입		
	특약	선택가입	-	
가입한도	주계약	1,000만원		
	특약	재해장해연금특약 임작업재해보장특약	1,000만원	-
		장제비지원특약	100만원	
본인 부담금	주계약	지자체 보조금, 농협지원금액에 따라 상이함	보험료의 50%	
	특약	임작업재해보장특약 보험료의 50% 재해장해연금특약 보험료의 50% 장제비지원특약 보험료의 50%	-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 원칙		
국고보조		총보험료 50% 임작업재해보장특약 보험료의 50% 재해장해연금특약 보험료의 50% 장제비지원특약 보험료의 50%	총보험료의 50%	

주 : 1) 농업인안전보험Ⅱ은 1형, 2형, 3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보험료와 재해발생시 보상수준은 별표(다음 페이지)와 같음. (자세한 내용은 보험 약관을 참조)

2016 농업재해보험연감

❖ (무)NH농업인안전보험Ⅱ 보험료 및 보험금

구 분	1형	2형	3형	장애인형
보험료(원)	74,500	74,900	119,900	78,100
유족위로보상금(만원) (농작업 중 재해사망 기준)	5,000	7,500	10,000	7,500

자료 : NH농협생명 농축협사업부

4.2 농기계종합보험(12개 기종)

구 분	농기계종합보험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도입일	1996.1.1		
사업형태	본사업		
사업지역	전국		
대상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스피드스프레이어(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지자체소유 농기계		
보장내용	농기계손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		
가입단위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보험기간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가능)		
상품구성	• 주계약 • 특약		
보험료 납입방법	일시납원칙		
국고보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분무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농기계 손해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보험료의 50% (5천만원 초과분은 본인부담)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보험료의 50%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국고지원 없음
	지자체 소유 농기계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대물배상Ⅲ	국고지원 없음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 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기 종	주계약(농기계사고)			특약(담보별 보험료(원))				
	보험료(%)		자기부담금(만원)	자기신체 ²⁾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³⁾	
경운기	가입금액의 0.37		10	34,930	21,980	7,340	39,730	
광역방제기	가입금액의 1.11		10	34,930	26,850	7,690	43,610	
농업용굴삭기	가입금액의 0.63		10	34,930	26,850	7,690	43,610	
농업용동력운반차	가입금액의 0.57		10	34,930	26,850	7,690	43,610	
농업용로우더	가입금액의 0.63		10	34,930	26,850	7,690	43,610	
베일러	가입금액의 0.69		10	34,930	26,850	7,690	43,610	
승용관리기	가입금액의 0.78		10	34,930	21,980	7,340	39,730	
승용이앙기	가입금액의 0.63		10	28,170	11,960	1,380	6,080	
콤바인	가입금액의 1.84		10	28,170	11,960	1,380	6,080	
트랙터	가입금액의 0.71		10	34,930	26,850	7,690	43,610	
항공방제기	비행 중 위험		10.83	300	34,930	1,411,300	468,770	43,610
	비행 외 위험	1억 이하	2.19					
		1억 초과	4.26					
SS분무기	가입금액의 0.74		10	28,170	11,960	1,380	6,080	
지자체소유 농기계	구득요율		2	-	-	-	-	

주 : 1) 자기부담금은 농기계보험금을 지급할 때 차감하는 금액

2) 가입금액 1억 원 기준

3) 가입금액 1억 원 기준

자료 : NH농협손해보험 정책보험부

[그림 1-1-7] 보험가입대상 농기계



• 동력경운기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자주식 원동기계. 다만, 특수한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



• 광역방제기(원거리용)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 등을 갖춘 원거리용 방제기



• 농업용 굴삭기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 기계.



• 농업용(승용형) 동력운반차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된 운반기계



• 농업용 로더(loader)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 농업용 베일러(baler)

벼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묶는 자주식 또는 피견인식의 농업용 베일러(랩피복기 겸용형을 포함)



• **승용형 관리기**
고랑·두둑 성형, 중경(中耕),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 다양한 관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주식 관리기계



• **승용이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식부(植付)장치 및 운전조작장치 등을 갖추고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승용자주식 이앙기계



• **농업용 콤바인**
농경지에서 벼·보리·콩·유채 등과 같은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하고 선별하는 장치가 부착된 승용자주식(乘用自走式) 수확기계



• **농업용 트랙터**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및 작업기 승강장치를 갖추고 작업기를 연결하여 경운(耕運), 정리(整地), 운반 등 농작업(農作業)을 수행하는 기계



• **농업용무인항공방제기**
병해충 방제(防除),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 등을 갖춘 농업용 무인항공방제기(헬기)



• **SS분무기(스피드스프레이어)**
과수원 등에서 150도 이상의 방향으로 동시에 약액 분출이 가능한 자주형 또는 부착형 형식의 방제기계(승용자주식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이하)